

## 2026년 서울특별시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 보급사업 공고

「2026년도 서울특별시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 보급사업」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0. 30.



### 1. 지원 대상

- 서울 노원구 지역 주택 소유주 및 해당 주택 소유주의 설치 동의를 받은 임차인

\* 「건축법」 시행령 [별표 1]에 따른 단독주택, 공동주택

\*\* 개인뿐 아니라 법인·기관(중앙·지방정부 제외)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경우 신청 가능(발급 가능 주택에 한함)

\*\*\*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해당 주택의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주택에 한함

### 2. 지원 규모 : 64백만원 / 80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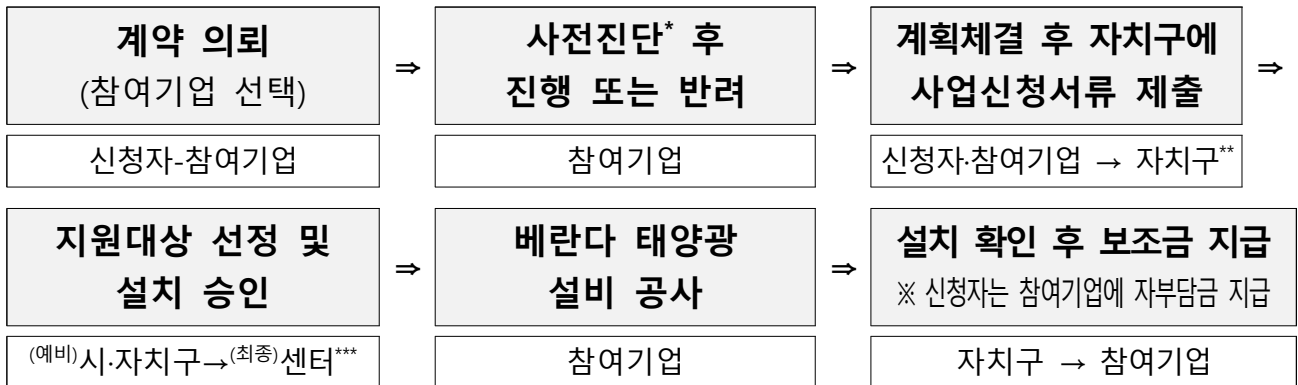
### 3. 지원 기준

- (지원용량/설치단가) 가구당 500W 이내 / 100만원(500W 기준)
- (보조금액) 1W당 1,600원 정액 지원
  - \* 500W 기준 설치비의 80% 보조금 지원

- (대상제외) 과거 정부 또는 서울시 예산이 포함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현재까지 존치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\* 보조사업 이력 : 정부(舊산업부, '16~'18년), 서울시('14~'21년)

#### 4.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



\* 참여기업이 발전효율, 설치효과 등 사전진단(측수, 일조조건 등에 따른 발전량 확인)

\*\* 자치구 :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소재지 자치구(이하 '자치구')

\*\*\* 센터 : 한국에너지공단 內 재생에너지센터(이하 '센터')

- (신청기간) **공고일 ~ 2026. 11. 30.(월)**(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)
- (신청방법) 서울시가 선정한 **참여기업 [붙임 1]을 통해 신청**
  - 신청자가 [붙임 1] 참여기업 중 1개 업체 선택
  -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계약체결 후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
- (대상선정) 참여기업의 사전진단 자료를 기반으로 자치구가 지원대상을 예비 선정한 후, 센터의 설치계획 승인을 거쳐 최종 대상 확정
- (신청서류) 신청유형에 따라 다음의 서류 제출
  - ①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**<개인>**
    -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
    - 본인서명사실 확인서
    -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

- 재생에너지설비 (의무)사후관리 협조 동의서
- (공동)소유주 설치 동의서 <공동 소유 또는 임차인 신청의 경우>
- 임대차 관계 확인서류 <임차인 신청의 경우>
- 관리주체 동의서 <해당 시>
-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 사전 점검표

## ②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<단체>

- 참여세대 명세서
- 표준설치계약서
- 자부담금 약정서 <해당 시>
- 건축물대장
- (일반 공동주택)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대표자 확인서류
- (법인·기관 공동주택) 법인인감증명서
- 법인·기관 소유 세대의 실사용자 동의서
- 재생에너지설비 (의무)사후관리 협조 동의서
- 관리주체 동의서

## 5. 보조금의 지급

- (신청기간) 공고일 ~ 2026.12.21.(월)
- (신청방법)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완료 후 자치구에 설치 확인 요청 및 보조금 지급 신청
  - \* 신청자는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시공업체에 지급하고, 시공업체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을 자치구에 신청
  - \*\* 단체신청 국비 보조금액은 평가위원회 검토 결과, 자부담금 분할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신청자(단체)와 참여기업 간 약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(지급일정) 자치구(1차) 및 센터(2차)가 설치 확인한 후 지급

○ (신청서류)

①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

-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현장 점검표(준공사진 포함)
-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
- 자부담금 증빙자료(현금영수증, 신용카드영수증 등)

② 주요 의무사항 안내 및 서약서

③ 무상 하자이행보증서(5년) 사본

## 6. 보조금의 환수

○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

- 조망권·일조권 침해 등 민사상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
- 사업기간 및 계획(제품, 시공방법 등)의 임의 변경
- 전기공사업법, 공공주택관리법,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법의 미준수
- 센터의 장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

\*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(시공업체)으로부터 보조금 전액 환수

## 7. 사후 관리

○ 참여기업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증을 실시함

- 보증기간(5년) 내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여야 함

\*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보증서를 발행하여 교부

○ 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(의무)사후관리 점검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

- 신청자는 베란다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를 성실히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하자 발생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음
-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/S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, 하자이행 보증기간(5년)이 경과한 경우는 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(☎1544-0940)를 통해 A/S 접수

※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: <https://nr.energy.or.kr/frsc/>

## 8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자는 신청 전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,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
-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표준설치계약서 내용, 설치용량,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확인하고, 특히, 자부담 금액, 설치모델, 무상 하자보수조건,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함
-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·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(서울시, 자치구) 및 재생에너지센터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
-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은 베란다 외에도 적정 일조량이 확보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공간에 설치 가능하나, **베란다 이외의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센터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**
- 「공동주택 관리법」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,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제5호)

- 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**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함**
  - 설비를 양도하거나 5년 이후에 이전·처분을 하려면 센터의 장에게 신고
  - **설비의 폐기,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**
  -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설비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참여기업(시공업체)에게 기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
-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서울시가 선정한 참여기업 외의 시공업체를 통해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
-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함
-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(기후환경에너지부 고시)과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(재생에너지센터 지침)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상세내용 문의
  -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[붙임 2] 내용 참조
  - 문의처

| 기관명                |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한국에너지공단<br>재생에너지센터 | 콜센터     | 1855-302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재생지원사업처 | 052-920-0772~3 |
| 서울시                | 녹색에너지과  | 02-2133-3559   |
| 노원구                | 탄소중립도시과 | 02-2116-3217   |

**※ 허위·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**

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·과장 광고를 주의하시기 바라며, 서울시가 선정한 참여기업 해당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2026년 서울특별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
2. 사업신청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
  3. 개인 신청 서식(7종)
  4. 단체 신청 서식(9종)
  5.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 사전 점검표
  6. 가정형(베란다)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
  7.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현장점검표
  8. 주요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서약서